

부 칙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마목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4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4호)”를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5호)”로 한다.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

제2장에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업종별 대출등 한도)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각 목의 업종별 대출등이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2. 제1호 각목의 대출등의 합계액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5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동성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유동성 비율은 100분의 90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4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제5호-----  
-----  
-----  
-----  
-----

⑥-----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비율(제1항제5호-----  
-----  
-----  
-----

제16조의8(업종별 대출 등 한도)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각 목의 업종별 대출등이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 건설업

나. 부동산업

2. 제1호 각목의 대출등의 합계액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50